

# 2025년 프리팁스(Pre-TIPS) 및 포스트팁스(Post-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

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2025년 프리팁스(Pre-TIPS) 및 포스트팁스(Post-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5월 8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.
  - ① 실명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  - ② 실명등록 경로 : [www.siren24.com](http://www.siren24.com) (☎1577-1006)
- \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- \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 선정기업은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 1

### 사업개요

**사업목적** :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

**선정규모** : 프리팁스 50개사 내외, 포스트팁스 77개사 내외

세부사업명	지원대상	협약기간	지원금	자기부담사업비	신청·접수		선정평가
프리팁스 (Pre-TIPS)	창조경제혁신센터가 5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및 추천한 비수도권 소재 초기창업기업 (창업 후 3년 이내)	8개월	최대 1억원 (평균 91백만원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1차	5.8~5.27	5~6월
					2차	8.1~8.20	8~9월
포스트팁스 (Post-TIPS)	팁스 R&D '완료(성공)'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(창업 후 7년 이내)	18개월	최대 7억원 (평균 3.3억원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1차	5.8~5.27	5~7월
					2차	8.1~8.20	8~9월

\* 접수, 평가, 선정 일정 및 규모 등은 신청·접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K-스타트업 누리집([www.k-startup.go.kr](http://www.k-startup.go.kr)) 등을 통해 공지 예정

---

## (1) 프리팁스(Pre-TIPS)

---

※ 본 공고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후 추천받은 창업기업이 대상이므로 일반기업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

###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(Seed)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(TIPS) 창업기업으로 육성
- \* 전체 지원규모를 지방소재 창업기업(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)으로 선발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

- 지원대상** :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비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 소재 초기창업기업
- \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- \*\*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인정기준은 [참고4] 투자 인정기준 참고
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(평균 91백만원)
- \*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

#### < 지원 내용 >

지원기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8개월	최대 1억원 (총 사업비의 70% 이하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
		10% 이상	20% 이하

- 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

- 선정규모** : 50개사 내외

\* 총 2회 모집 예정이며,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

## 2

## 신청자격 및 요건

### 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, 제2조제3호,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, 아래의 **요건①~③**을 **모두 충족**하는 기업

#### < 신청 세부 조건 >

##### ▶ 신청가능 업력 : 2022년 5월 9일 ~ 2025년 5월 8일
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  - \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참고 1)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**)
  - \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- **요건①** :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기업

\* 투자 약속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 선정 시,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(주금납입·등기)가 완료되어야 함

-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기관이 총 5천만원 이상 공동투자 후,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기업도 신청 가능

#### < 협력기관의 종류 >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창업기획자(중소벤처기업부 등록)       |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(LLC 등 포함) |
| ③ 기업형(중소·벤처기업 및 중견·대기업 등) | ④ 글로벌 투자·보육 전문기관*      |
| ⑤ 기타(기술지주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)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(지사 등)이 있으며,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

- **요건②** : 본사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소재 기업
  - \* 협약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에 잔류 해야하며,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명서로 소재지 사실 확인 예정
- **요건③** :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
  - \* 모집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
  - \*\* 협약체결일 기준 근로자 2인 미만인 경우 협약 이후에도 제재될 수 있음

□ **신청 제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**

① **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**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**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**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**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(기업)**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**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(기업) ([참고 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**

⑤ **중소벤처기업부 '팁스 R&D' 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\*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(기업)**

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\* 단,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(계속 사업을 '25년에 협약한 경우 참여 불가)

\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([참고3] 참조)

⑥ 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**

⑦ **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 (기업)**

⑧ **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(기업)**

\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**2025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**

⑩ **신청·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(기업)**

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
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⑬ **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**

## □ 의무 및 역할

○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\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
○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# 3

## 지원내용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(평균 91백만원)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<b>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(평균 91백만원)</b></li> <li>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</li> <li>**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자(기업)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</li> <li>• <b>총 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</b></li> <li>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</li> <li>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</li> </ul>														
	<p><b>&lt;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7천만원인 경우) &gt;</b></p>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 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사업비의 10%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사업비의 20% 이하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(100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,000만원 (70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만원 (10%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,000만원 (2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
	총 사업비		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
현금		현물													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			
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												

## 4

## 접수방법

### □ 접수 기간

- 1차 : 2025. 5. 8.(목) ~ 5. 27.(화), 16:00까지
- 2차 : 2025. 8. 1.(금) ~ 8. 20.(수), 16:00까지

\* 신청·접수 현황 등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접수 일정 및 횟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

#### 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 - \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8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### □ 접수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[www.k-startup.go.kr](http://www.k-startup.go.kr))
  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    - \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    - \*\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    - \*\*\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붙임 5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#### 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**탈락 처리**
- ②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**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## □ 제출서류

### ○ 사업계획서 1부

- [붙임 1] 양식 활용하고,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### ○ 기타 제출서류 각 1부

#### 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 (양식1) 사업계획서	PDF 파일 첨부	<p>온라인시스템(K-startup) 업로드</p> <p>※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으로 압축 후 제출</p> <p>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30MB 초과 불가</p>
② (양식2)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
③ (양식3) 참가신청서		
④ (양식4)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동의		
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PDF 파일 첨부	
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	
⑦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확인서		
⑧ 투자사실확인서		
⑨ 청렴서약서		
⑩ 주주명부		
⑪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		
⑫ 비수도권 소재 협약서		
⑬ 사실증명 (총사업자등록내역)	PDF 파일 첨부	
⑭ 사업자등록증명원 (신청기업 외 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	
⑮ 휴·폐업사업사실증명원 (‘휴·폐업’사업자 보유 시)		
⑯ 기타 가점 및 성과 관련 증빙서류 등	PDF 파일 첨부 (가점 등* 해당시)	

\*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\*\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존에 발급받은 '창업기업 확인서'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(단, 모집공고일 기준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)

## 5

## 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** : 신청기업 요건·투자 검토,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\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

### 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신청·접수	② 요건·투자 검토	③ 발표평가	④ 최종 선정
창업기업이 K-startup에서 사업 신청	요건 및 투자 적절성 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	창경센터·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정부지원사업비 등 선정 확정
(1차) '25.5.8~5.27	'25.6월 중	'25.6월 말	'25.7월 초
(2차) '25.8.1~8.20	'25.8월 말	'25.9월 초	'25.9월 중

신청자(기업)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\*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 방법

① **요건·투자 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가점 등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확인 후, 투자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적절성 검토

②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(가점 포함)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(동 사업 신청자)와 추천한 창조경제 혁신센터 담당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

\* 평가시간 : 40분 이내 (발표 20분 내외 + 질의응답 20분 내외)

\*\* 평가방법 :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석자가 추천 사유 설명 및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

③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\* 선정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>

※ 최종 선정 통보된 기업은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\*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2025년 프리팁스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

※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
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
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「2025년 프리팁스」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\* 확약서 안내·교육(발표평가 대상자) → 확약서 배포(선정 예정자) → 확약서 수취

\*\*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
-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\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\*\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## 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**< 발표평가 지표 주요내용 >**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 개발/개선 동기(문제인식), 목표시장 분석 등
실현가능성	• 창업아이템 개발/개선 방안, 고객요구 대응, 차별화 방안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 사업화 방안, 추진계획, 자금 조달계획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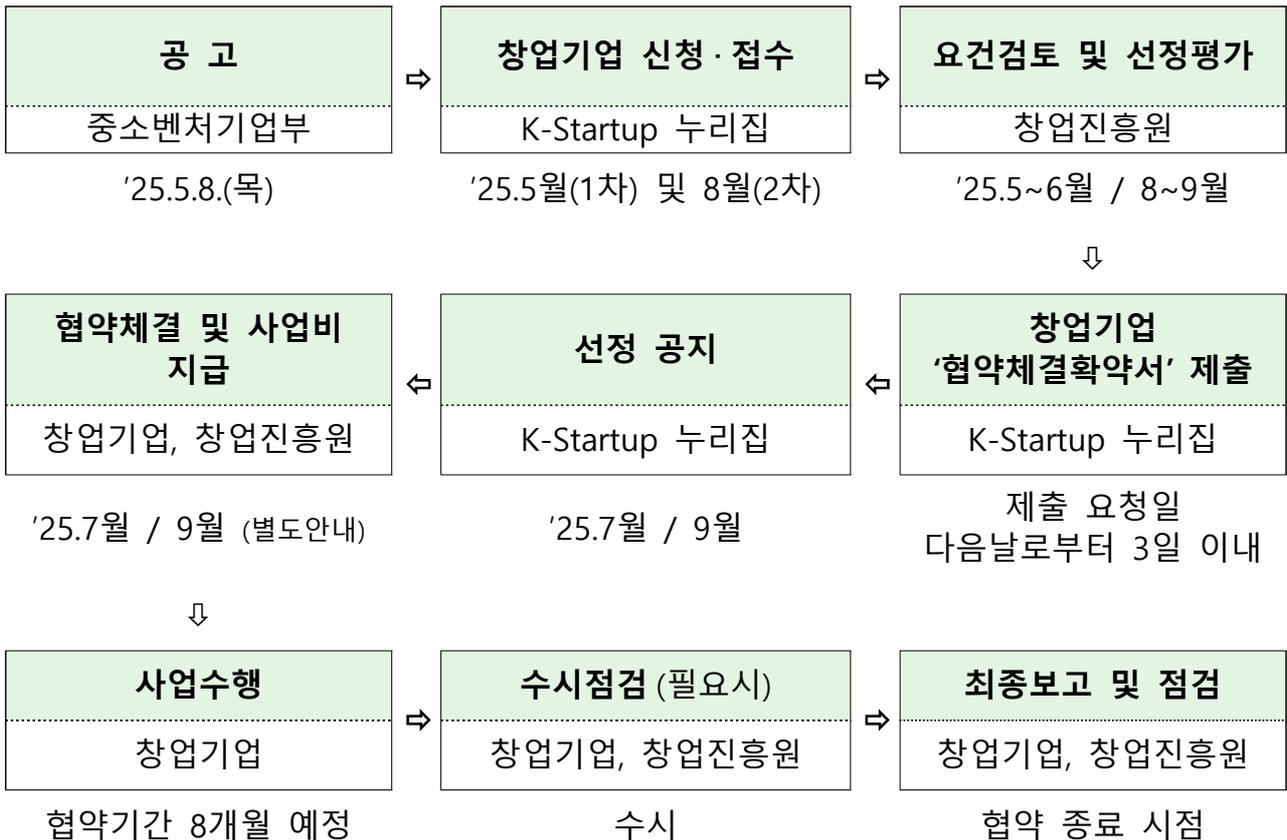
-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,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기업 등에서 각 1점씩, 최대 2점의 발표평가 가점 부여

**< 가점 항목 및 점수 >**

가점 항목	점수	비고
1)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[붙임3 참조]	1점	최대
2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	1점	2점

**□ 사업 운영일정**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## (2) 포스트팁스(Post-TIPS)

### 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팁스(TIPS)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 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
- 지원대상** : 팁스 R&D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“완료(성공)”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\*\* 이내 창업기업
  - \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  - \*\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인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7억원 (평균 3.3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#### < 지원 내용 >

구분	지원기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	현금	현물
일반*	18개월	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30% 이상 현금·현물 제한 없음	
최우수**		최대 7억원 총 사업비의 80% 이하	총 사업비의 20% 이상 현금·현물 제한 없음	

\*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

\*\* 팁스 성공 요건(매출, 고용, 투자 등) 초과 달성(예 : 2배 이상) 등 우수 성과를 달성한 일부 창업기업 대상 포스트팁스 선정 후 사업비 최대 7억원 배정

- 협약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
- 선정규모** : 77개사 내외

#### < 포스트팁스 주관기관 >

연번	주관기관	선정규모 (개사)
1	한국벤처캐피탈협회	77개사 내외
2	한국기술벤처재단	

\* 선정규모 및 일정은 기관별 신청·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
(대내·외 상황에 따라 모집 차수별 일부 주관기관에서만 창업기업을 모집할 수 있음)

## 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, 후속투자 유치 금액\*이 100억원 미만이며, 아래의 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

\* 후속투자 유치 금액은 틱스 선정 이후 유치한 국내·외 투자금액의 합계

### 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#### ▶ 신청가능 업력 : 2018년 5월 9일 ~ 2025년 5월 8일

•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
•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
\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•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[참고1]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**)

\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
•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※ (**참고사항**) 단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4항에 따라 **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**

\* **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** : 「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4-2호) [별표1]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
→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, 최종선정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,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 후에도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

### <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>

인공지능	스마트제조	드론·개인이동수단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빅데이터	시스템반도체	미래형 선박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5G+	자율주행차	재난/안전	우주
블록체인	전기수소차	스마트시티	차세대 원전
서비스플랫폼	바이오	스마트홈	양자
실감형콘텐츠	의료기기	신재생에너지	사이버 보안
지능형 로봇	기능성 식품	이차전지	



- 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 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- ⑤ 중소벤처기업부 '팁스 R&D' 또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\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-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\* 단,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(계속 사업을 '25년에 협약한 경우 참여 불가)
- \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([참고3] 참조)
-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-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-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- \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⑨ 2025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⑩ 신청·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(기업)
- 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## 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 - \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 2

## 지원내용

### 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최대 7억원 (평균 3.3억원) 및 창업프로그램 등

- 팀스 성공기업 중 우수한 성과(성공 요건 2배 이상)를 달성한 일부 팀스 졸업기업은 사업비 최대 7억원 지원(자기부담사업비 비중 하향)

\* 팀스 R&D 성공 요건(매출, 투자 등) 2배 이상 달성기업(총 지원규모의 최대 10%)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<b>사업화 자금 최대 7억원 지원 (평균 3.3억원, 우수성과 일부 기업에 최대 7억원까지 지원)</b></li> <li>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</li> <li>**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자(기업)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</li> <li>• <b>총 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</b></li> <li>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, 현물 제한없음</li> <li>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3억 5천만원인 경우) &gt;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6 763 1417 920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 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%</td> <td>총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 colspan="2">총사업비의 3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5억원 (100%)</td> <td>3억 5,000만원 (70%)</td> <td>5,000만원 (10%)</td> <td>1억원 (2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30% 이상		5억원 (100%)	3억 5,000만원 (70%)	5,000만원 (10%)	1억원 (20%)
	총 사업비		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
현금		현물													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30% 이상													
5억원 (100%)	3억 5,000만원 (70%)	5,000만원 (10%)	1억원 (20%)												
창업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기본 프로그램)</b> 참여기업의 수요 및 성과, 업력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기본 프로그램(예시) &gt;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3 1496 1414 1865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투자유치</td> <td>- 투자유치 프로그램 (IR, 밋업, 전략투자(SI) 매칭 등) -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(피치덱 보완, 투자 계획, 경영권 확보 등)</td> </tr> <tr> <td>글로벌진출</td> <td>- 글로벌 판로개척(해외전시회, 세미나 등) -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(밋업 등)</td> </tr> <tr> <td>EXIT</td> <td>- 기업공개(IPO), 인수·합병(M&amp;A) 등 창업기업의 출구전략 - 중장기 EXIT 로드맵 구축 컨설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주관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</li> <li>• <b>(특화 프로그램)</b> 주관기관의 강점·인프라 등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</li> </ul>	구분	주요내용	투자유치	- 투자유치 프로그램 (IR, 밋업, 전략투자(SI) 매칭 등) -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(피치덱 보완, 투자 계획, 경영권 확보 등)	글로벌진출	- 글로벌 판로개척(해외전시회, 세미나 등) -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(밋업 등)	EXIT	- 기업공개(IPO), 인수·합병(M&A) 등 창업기업의 출구전략 - 중장기 EXIT 로드맵 구축 컨설팅						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
투자유치	- 투자유치 프로그램 (IR, 밋업, 전략투자(SI) 매칭 등) - 후속투자 유치 컨설팅 (피치덱 보완, 투자 계획, 경영권 확보 등)														
글로벌진출	- 글로벌 판로개척(해외전시회, 세미나 등) -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(밋업 등)														
EXIT	- 기업공개(IPO), 인수·합병(M&A) 등 창업기업의 출구전략 - 중장기 EXIT 로드맵 구축 컨설팅														

## 4

## 접수방법

### □ 접수 기간

- 1차 : 2025. 5. 8.(목) ~ 5. 27.(화), 16:00까지
- 2차 : 2025. 8. 1.(금) ~ 8. 20.(수), 16:00까지

\* 신청·접수 현황 등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접수 일정 및 횟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

#### 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 - \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8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### □ 접수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[www.k-startup.go.kr](http://www.k-startup.go.kr))
  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    - \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    - \*\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    - \*\*\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붙임 5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#### 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** 처리
- ②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## □ 제출서류

### ○ 사업계획서 1부

- [붙임 2] 양식 활용하고,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### ○ 제출서류 각 1부

#### 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 (양식1) 사업계획서	PDF 파일 첨부	<p>온라인시스템(K-startup) 업로드</p> <p>※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으로 압축 후 제출</p> <p>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30MB 초과 불가</p>
② (양식2)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
③ (양식3) 참가신청서		
④ (양식4)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동의		
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PDF 파일 첨부	
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	
⑦ 청렴서약서		
⑧ 주주명부		
⑨ 팀스 졸업 성공 논문		
⑩ 사실증명 (총사업자등록내역)	PDF 파일 첨부	
⑪ 사업자등록증명원 (신청기업 외 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	
⑫ 휴·폐업사업사실증명원 (‘휴·폐업’사업자 보유 시)		
⑬ 기타 가점 및 성과관련 증빙서류 등	PDF 파일 첨부 (가점* 해당시)	

\*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\*\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존에 발급받은 '창업기업 확인서'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(단, 모집공고일 기준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)

## 5

## 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** : 신청기업 요건 검토,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\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**선택한 주관기관**에서 안내 예정

### 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신청·접수	② 요건 검토	③ 발표평가	④ 최종 선정
창업기업이 K-startup에서 사업 신청	요건 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	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정부지원사업비 등 선정 확정
(1차) '25.5.8~5.27	'25.6월 중	'25.6월 말	'25.7월 초
(2차) '25.8.1~8.20	'25.9월 초	'25.9월 중	'25.9월 말

신청자(기업)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\*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□ **평가 방법**

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가점 등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후, 요건 충족 기업 대상 발표평가 안내

②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(동 사업 신청자)가 발표평가에 참여해야 하고, 발표·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\* 평가시간 : 40분 이내 (발표 20분 내외 + 질의응답 20분 내외)

③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\* 선정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>
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기업은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\*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2025년 포스트팁스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미제출시 차순위자에게 사업 참여기회 부여)
  - \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, 위 발송일 기준
- ※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- 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- 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「2025년 포스트팁스」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\* 확약서 안내·교육(발표평가 대상자) → 확약서 배포(선정 예정자) → 확약서 수취
- \*\*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
-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- \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- \*\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## 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 발표평가 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의 개발·고도화 동기(문제인식), 시장 및 문제 분석 등
실현가능성	• 문제 해결 고도화 및 고객 수요 대응 방안, 경쟁력 확보 전략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의 스케일업 전략(타당성, 일정 등), 자금조달·EXIT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인력의 역량과 추가확보 방안, 지속가능경영 등

- 청년창업기업(대표자 만 39세 이하),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기업 및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기업에 각각 1점(최대3점) 가점 부여

< 가점 항목 및 점수 >

가점 세부 항목	점수	비고
1) 청년창업기업 (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, 공동·각자 대표는 1인이상)	1점	최대 3점
2)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[붙임3 참조]	1점	
3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	1점	

**사업 운영일정** ※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선정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

### (3) 공통사항

#### 1 유의사항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"형법"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,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 "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"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 할 수 있습니다.

#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  - \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 - \*\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. 단, '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  - \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 - \* 선정 완료 후 공동·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'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

## 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

-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창업진흥원에 신청 가능
- 창업진흥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 처리됨
  -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

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
\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문의처

구 분		담당 기관	전화번호
프리팁스	전문기관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	(국번없이) 1357
포스트팁스	주관기관	한국벤처캐피탈협회	02-3017-7026
		한국기술벤처재단	02-958-6695
	전문기관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	(국번없이) 1357
시스템 문의	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	(국번없이) 1357
K-스타트업 누리집		www.k-startup.go.kr	

**참고 1**

**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**  
**〔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〕**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	불인정 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불인정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불인정 창업 불인정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	불인정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 불인정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불인정 창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불인정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불인정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불인정	
	이종		창업	

- ※ 위 표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(창업의 범위)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,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\* 국가법령정보센터 : law.go.kr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  
\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신청가능 여부 : "창업여부"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. 단,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
- ※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,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

**참고 2**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희주점업	56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**참고 3****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**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·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· 창업도약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·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	중소벤처기업부
5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TIPS 사업화)	중소벤처기업부
6	· 통합 창업패키지 지원(특화창업패키지)	중소벤처기업부
7	·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8	·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9	·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10	·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1	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2	·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3	·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4	·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5	· 예술기업 성장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6	·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(엑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·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·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·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1	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2	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23	·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·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환경부
25	· 농식품 벤처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6	·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27	·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

**참고 4**

**2025년 프리팁스(Pre-TIPS) 투자 인정 기준**

구분	단독투자 (창조경제혁신센터)	공동투자 (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협력기관)
투자 금액	5천만원 이상	5천만원 이상 * 창조경제혁신센터가 50% 이상 투자 의무
투자 시기	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*	
투자 재원	고유계정형** 또는 펀드계정형***	
투자 형태	신주투자****	
주식 형태	보통주 또는 종류주식	
투자 후 지분율 (총 100%)	창업기업(대표 및 임직원 등) 지분 60% 이상, 창조경제혁신센터(협력기관 포함) 지분 30% 미만	
투자자 책임	창업기업 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보유 주식 매각 불가	

\* 공동투자일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금 납입일의 3개월 이내에 협력기관의 투자금 납입이 완료 되어야함

\*\* 고유계정형 :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민간자금으로 구성

\*\*\* 펀드계정형 : 모태펀드, 성장사다리펀드, 국민연금 등의 정부 및 지자체 재원이 포함된 자금으로 구성 (단, 펀드계정형일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업무집행조합원이어야 함)

\*\*\*\* 전환사채(CB), 조건부지분전환계약(CN) 등 조건부 사채의 경우 인정 불가